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2021. 9.



책임운영기관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성과 및 한계	3
III. 추진 방향	5
IV. 주요 추진 과제	6
1.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6
2.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10
3.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13
V. 향후 일정	15
<붙임 1> 주요 추진과제 목록	16
<붙임 2> 특수외국어 실태조사 결과 요약	18
<붙임 3> 국내 대학 및 대학원 교육 현황	20

I. 추진배경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 (근거)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정('16.8월) 이후, 2017년부터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 (필요) '21년은 제1차 기본계획이 만료되는 해로 향후 5년간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제2차('22~'26) 기본계획 마련
 - ※ 특수외국어(Critical Foreign Language) : 국가 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어(53개)

□ 해외 한류 확산, 국제교류협력 다변화를 뒷받침하는 전문인재 수요 증가

- (번역수요 증가) 문학, 드라마, 웹툰 등 한국 문학 및 문화 콘텐츠 소비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특수외국어 번역인재 수요 증가
 - ※ 한국문화콘텐츠 주요 영역에서 소비비중 상위1~3위가 특수외국어 사용국(해외한류실태조사, '21)
- (교류협력 다변화) 다자 간 FTA 협정 체결, 한국형 ODA 지원*, 신남방·신북방 국가 대상 교역 확대** 등에 따른 분야별 특수외국어 전문가 확보 중요
 - *그린뉴딜 및 기후변화 등의 비중 증가, 지난 10년간 예산 2배 확대(3조 4,270억원, '20)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20.11월), 신북방 '9-Bridge 전략' 2.0 추진('20)

□ 국내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언어교육 지원 필요

- (다문화 가정 증가) 다국적·연령·입국시기·한국어 능력 등이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적용 지원 필요
 - ※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증가 추이: ('10)181,671명 → ('19)359,610명
 - ※ 다문화 가족 자녀 국적별 분포에서 상위 10개국 중 5개국*이 특수외국어 사용
 - *베트남88,476명, 필리핀24,502명, 캄보디아10,850명, 몽골3,944명, 태국3,607명('19)
- (학령인구 감소) 대학별 미충원 심화에 따른 학과 통폐합·폐지, 정원 축소 등으로 특수외국어교육 기반 약화 우려
 - ※ 만18세 학령인구: ('18)621,090명 → ('21)476,259명, 특수외국어 대학원 수: ('16)14개 → ('20)10개

추진 경과

□ 제1차 5개년('17~'21) 기본계획 추진('17.3월~)

- 지난 5년간 3개 전문교육기관(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을 지정하여 15개 특수외국어 우선 지원

<제1차 5개년('17~'21) 사업에서 지원한 15개 특수외국어>
미얀어(인도네시아어·말레이시아어), 몽골어, 미얀마어, 베트남어, 스와힐리어, 아랍어, 우즈베크어, 이란어, 크메르어, 터키어, 태국어, 포르투갈어·브라질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힌디어

□ 정책 연구('20.5~12월)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정책연구('20.9월)[붙임 2 참고
※ 언어별 발전 잠재력,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 학문 수요 등 분석을 통한 지원 우선순위 도출
- 제2차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20.12월)

□ 의견 수렴('21.1~8월)

- (부처 협력) 관계부처(기관) 8개 참여
 - 협업과제 발굴을 위한 회의(3.3.)를 시작으로, 관련부처 협력회의(7.27.) 등 정책·사업 연계를 위한 실무 협의('21.3월~8월)
※ 교육부-여가부-법무부(3.3.), 문체부 한국문학번역원(3.4.),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번역서비스 협의(3.23.~30.), 외교부 국립외교원(4.14.), 국방부 국방어학원(5.3.), 경기도교육청(5.11.) 등
- (전문가) 특수외국어·교육과정·평가·외교·경영 등 분야별 참여
 - 분야별 전문가들의 자문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21.1월~8월)
※ 교육과정 및 평가 자문회의(4회), KOTRA 등 기업 관련 의견 수렴(4회), 제1회 특수외국어 대사초청포럼(4.30.) 등 주한 특수외국어 사용국 대사관 협의(5회),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워크숍('21.6.21.) 등 학계·고등교육기관 의견 수렴(6회)
- (대국민) 국회-국립국제교육원 공동주관 포럼('21.4.14.)과 제2차 기본계획 공청회('21.6.30.)를 통한 의견 수렴

II. 성과 및 한계

1

주요 성과

□ [전문인재 양성] 학문후속세대 양성 지원체계 강화

- (학·석사 연계과정) 일반대학원과 통번역 대학원 학·석사 연계과정 (3.5+1.5) 개설 및 등록금 지원(학·석사연계 8개 과정, '18~'20)
- (국외 연수) 특수외국어 전공자(대학·대학원생)를 대상으로 하는 장·단기 국외 교류 및 연수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269명 참여, '18~'20)
- (교과·비교과 프로그램) 특수외국어 역량 향상을 위해 탄뎀(1:1)학습*, 특수외국어 경시대회, 어학 및 취업 관련 캠프, 학습동아리 등 운영
*(탄뎀학습)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습자 두 명이 서로 상대방의 말을 가르치고 배우는 자기주도 기반의 협동학습

□ [교육저변 확대] 청소년·시민 대상 교육기반 마련

- (온라인) K-MOOC(21개 강좌, '18~'20)·스마트 콘텐츠(15건, '18~'20) 개발 및 보급, 학습동영상 제작,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확대
- (초·중등)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
※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강좌 참여(학생 1,114명, 학부모 323명, '20~'21.상)
- (일반인) 유관 기관, 지자체 다문화 및 평생교육 수요 연계
※ (부산외대) 아세안문화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강좌 운영(743명 수강, '18~'20)

□ [학부교육 내실화] 표준교육과정·교재·평가문항 개발 및 보급

- (교육자료 개발) 15개 언어별 표준교육과정(힌디어 등 7개 언어는 C2까지 개발), 기본교재, 평가문항을 유럽언어공통기준*에 맞추어 A1 ~ B2까지 개발·보급
*유럽언어공통기준(CEFR) - A1(입문), A2(기본), B1(중급), B2(중상급), C1(상급), C2(최상급)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표준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개발과 연계한 15개 언어 표준화평가를 개발하여 FLEX센터를 통해 시행(총 2회, 1,210명 응시, '20~'21)

□ 다양한 협력기관·프로그램을 통한 사업수혜대상 확대

- 1차 사업 전문교육기관(한국외대, 부산외대,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소속 교원과 학생에게 지원이 집중되어, 특수외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타 대학 학생과 다문화 가정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교육 지원 부족

⇒ 국민 누구나 다양한 특수외국어 학습 기회를 접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업 프로그램 확대

□ 체계적인 특수외국어 학습을 위한 지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기관과 연계한 온·오프라인 강좌를 확대하였으나, 단계별 강좌 개설, 학습이력관리 등 체계적인 학습을 위한 지원 부족
- K-MOOC, 교재, 어휘학습 앱 등의 교육 콘텐츠 활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 미흡

⇒ 다양하고 체계적인 수요 맞춤형 특수외국어 강좌 개설·운영 및 스마트 콘텐츠 무료 보급 등 양질의 학습지원 서비스 제공

□ 현장 적용 결과에 기반한 교육과정 및 평가 개발

- 개발 초기 표준화위원회를 통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15개 특수외국어별로 설정한 내용과 수준에 차이가 발생
- 표준교육과정, 교재, 평가 등에 대한 타당화 연구 및 외부 전문가 인력풀을 통한 감수 필요

⇒ 1차 사업으로 개발한 성과물을 현장에 적용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구를 통해 교육과정 및 평가의 질적 고도화 추진

Ⅲ. 추진 방향

비 전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

목 표

전문인재 양성 교육, 산업분야에서 필요한 언어별 전문가 양성 지원

언어지원 확대 대국민 통·번역서비스 및 맞춤형 교육기회 제공

전략 1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 1-1 개인 성장단계별 특수외국어교육 지원
- 1-2 분야별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 1-3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전략 2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 2-1 부처 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번역 서비스 확대
- 2-2 국내·외 언어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2-3 특수외국어 학습·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전략 3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 3-1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및 평가 고도화
- 3-2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IV. 주요 추진 과제

1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 ◆ 학습자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특수외국어교육을 지원하고, 미래사회 맞춤형 특수외국어 전문가와 학문후속세대를 양성하겠습니다.

1-1

개인 성장단계별 특수외국어교육 지원

□ [초·중등] 수업·체험활동 운영 및 이중언어인재 양성 지원

- 초등 방과후학교, 중학교 자유학기활동, 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연계 특수외국어 수업 개설 및 언어·문화 체험활동 지원
 - *학생 진로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에 따라, 제2외국어 교과(아랍어, 베트남어)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교과순회전담교사 등 수업 개설 지원
 - ※ 공모를 통해 희망 시·도교육청을 우선 지원하며, 점차적으로 확대 예정
- ‘이중언어인재 양성’과 연계한 중·고등학생 ‘주니어 특수외국어 번역인재’ 과정과 진로진학 멘토링 운영
 -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수상자를 프로그램에 우선 선발
 - *대회 언어 26개 중 베트남어, 몽골어 등 20개 특수외국어 참가('13~'20)
 - 우수 학생들이 번역실습 아카데미, 번역발표대회, 관련전공 멘토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중언어 소질과 적성을 살리도록 지원

초·중등 수업·체험활동·멘토링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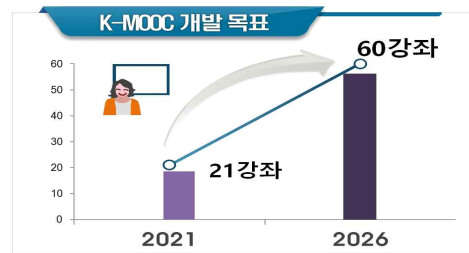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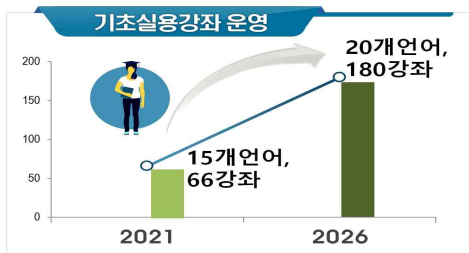
- ▶ [초등학교] (부산외대) 전남지역 초등 방과후교실 베트남어, 아랍어 원격화상수업 운영
 - 다문화 가정 학생과 일반학생 함께 참여하는 회화, 문화 수업(청계남초, 담양동초 등 50명, '20)
- ▶ [중학교] (한국외대) 헝가리어, 힌디어 등 6개 언어·문화 체험(한양중 66명, '20)
- ▶ [고등학교] 제2외국어 수업 및 세계시민교육·진로활동
 - (부산외대) 베트남어, 아랍어 수업(청주외고 등 13명, '20), 진로활동(동아고 등 96명, '19)
 - (한국외대) 세계시민교육 연계 기초어학강좌(고양국제고 41명, '21), 특강(대일외고 154명, '21)
- ▶ [다문화교육 연계] (한국외대)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태국어 등 3개 언어 5주 집중과정과 출신국가별 1:1 멘토링 운영(서울다솜관광고 116명 참여, '20)

□ [대학·대학원] 다양한 강좌 개설 및 학생 교류·연수 확대

- 표준교육과정에 따른 교재 및 평가를 활용한 특수외국어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여 학점 인정과 전공(복수전공 등) 확대에 활용
- 학과·대학부설 연구소 및 동아리 활동 연계 또는 다양한 번역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특수외국어 학습 및 연구 활동 활성화
- 특수외국어 공용어 국가 대상으로 다양한 학생 교류(탄뎀학습, 버디 프로그램 등)와 단기·중장기 국외 연수 프로그램 운영
- 특수외국어 분야 현직국가 석·박사 과정 국비유학생 선발·지원
 - ※ 특수외국어 분야 현직국가 석·박사과정 국비유학생 선발(매년 3명, '21~)

□ [평생교육] K-MOOC, 원격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별 기초실용강좌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수강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실시간 화상 또는 대면 수업 방식으로 기초실용강좌 이수 이후 단계별 심화 학습을 위한 K-MOOC, 어학 프로그램 개발·운영 확대
- ※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실시간 화상수업 810명 수강, ‘K-MOOC’ 11개 언어, 21개 강좌 운영 ('21.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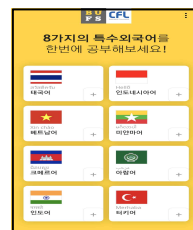
- 학습자 주도성을 키우는 온라인 학습시스템 및 어휘학습 앱 등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콘텐츠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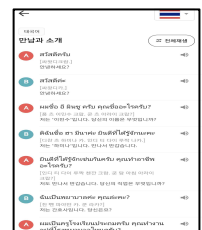
〈특수외국어 실시간 화상수업〉



〈필수어휘 학습사전-앱〉



〈필수표현 마스터-앱〉



1-2 분야별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 한류 콘텐츠를 특수외국어로 세계에 전파하는 번역인재 양성

- 특수외국어가 능통한 국민 대상으로 번역교육 전문기관 및 취업 인턴십과 연계한 문학 및 문화 콘텐츠 번역인재 양성과정 운영
 - 현지 한국어 전공 번역가 그룹과 공동 번역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교류·협력과 실습 위주의 과정 편성



□ 산학 협력 프로그램으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

- 산업 분야 현지(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 현장에 필요한 어학 및 지역이해 프로그램을 개발·활용
 - ※ (단국대·청운대 사례) 오송의료산업단지 기업체 및 간호학과 대상 의료 회화 강좌 운영
- 주한 외국공관 협력을 통한 대사관 연계 프로그램* 추진
 - 대사관 업무 보조, 민원 안내 등 현지인과 나누는 실전 회화와 문서 작성 등으로 실무적인 언어 능력 향상
 -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탄자니아 등 특수외국어 사용국가 대사관 협력

□ 교육 현장 요구에 부합하는 특수외국어 전문 강사 인력풀 구축

- 분야별 강좌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 강사 발굴 및 양성 지원
 - 교육과정, 교재, 평가 개발 단계부터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전문 강사 인력풀 구성 및 교수·학습·평가 전문성 신장 지원
 - ※ 기초실용강좌 강사 소양교육: 38명 이수(~'21) → 누적 250명 이상 이수('26)

1-3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 언어별 학문후속세대 추가 양성을 위한 지원언어 확대

- 국가 차원의 민간·공공·교육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기존 15개 언어에 신규 지원언어* 를 추가하여 특수외국어 지원 대상 확대
*실태조사('20.9월) 결과를 반영하여 이탈리아어, 라오스어 등 지원언어 추가 지정
- 학생 수 감소, 대학 학과 개편 등의 변화에도 안정적으로 언어별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 등 지속적인 지원

□ 특수외국어 교육역량을 갖춘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

- 특수외국어교육 전문성과 인프라를 갖춘 대학의 지정 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 추진
- 전문교육기관 운영('18~'20) 및 종합평가 결과('21.1월), 재지정된 대학*의 경우 사업 성과 분석을 반영하여 지원을 체계화하고 사업 내용 적정화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단국대·청운대 컨소시엄

□ 학과·대학 연계 전공교육 확대 및 대학원 진학 지원 강화

- 언어별 체계적인 교육과정·수업·평가를 통한 교육 내실화
 - 기존 연구·개발한 표준교육과정, 교재, 사전, 평가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수업과 평가 환류로 단계별 학습 개선
- 다양한 특수외국어 전공교육을 위한 과목 개설 지원
 - 특수외국어 전공학과와 타 학과·대학이 연계·융합하는 전공을 확대하고, 소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과목에 대한 개설 기준 완화
- 특수외국어 전공 확대를 위한 대학원 중심 진학 지원 강화
 - 언어적 유사성이 높은 인접어* 중심으로 수요가 적은 특수외국어 연계전공을 지원하고, 대학원 전공 신설 및 진학 지원 대상 확대**
*(인접어 사례) 태국어-라오스어, 터키어-아제르바이잔어, 이란어-다리어(아프가니스탄) 등
**(지원 대상 확대) 비전공 또는 타 대학 졸업자까지 포함하여 대학원 우수인재 중심 지원 강화

2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 ◆ 부처 간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번역, 교류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와 플랫폼 기반의 학습·연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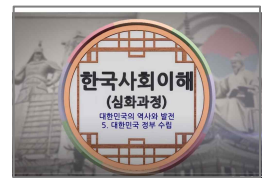
2-1 부처 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번역 서비스 확대

□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한 특수외국어 지원 서비스 확대

- 사회통합 및 조기적응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강의 내용에 대한 특수외국어 번역 서비스 및 강사 양성 지원
 - 재한 외국인의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동영상 번역 자막을 제공하고,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 대상 적응 지원을 위한 교재와 강의 개발 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번역 서비스 및 강사 양성 지원
- 전문교육기관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특수외국어 번역서비스 제공
 - 특수외국어 전공생들이 학과, 동아리 단위 재능기부를 통해 기관 업무와 일상에서 필요한 언어를 접하고 활용하도록 지원

특수외국어 지원서비스 사례

- ▶ [사회통합 프로그램] 법무부·국립국제교육원·전문교육기관 협업을 통해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회의 이해’ 강의 동영상 번역 서비스(베트남어, 태국어, 미얀마어) 시범 운영('21)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산외대는 부산경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원어민 강사양성, 다문화 가정 구성원 대상 강좌 등 베트남어 교재와 강사 인력풀 제공('19~'21)
- ▶ [공공기관 번역지원] 한국외대 특수외국어 전공 학생들이 미란다원칙, 기미독립선언서, 코로나 매뉴얼 등을 특수외국어로 번역하여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등 다양한 번역 재능기부 활동 전개('20)



□ 다양해진 학교 구성원에 대한 맞춤형 교육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 연계 특수외국어 지원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학생의 출신국가 및 입국 시기 다변화에 따라 교과학습, 진로·상담, 사회 적응 등에 필요한 특수외국어 지원
 - *중도입국·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학부모 안내자료 번역, 교사용 생활지도 회화자료 개발, 중학교 교과 보조교재 개발 협력 등
 - ‘다문화가정 대상국가와의 교육교류사업’*과 연계하여 초청 교사와 다문화학생, 특수외국어 전공학생 등 학습자 간의 네트워크 지원
 - *대상국과 우리나라 간 교사 교류를 통해 국내 다문화 및 교류대상국 한국 이해 제고, 7개국(필리핀, 몽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교사 180명('19)
- 시·도교육청 협업 초·중등 맞춤형(특수외국어) 프로그램 운영
 - 전문교육기관과 시·도교육청 간 협력을 통해 방학캠프, 체험활동, 멘토링, 상담, 상호교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 협력기관 간 연구 성과 공유 및 프로그램 교류로 학습효과 제고

- 특수외국어별 표준교육과정, 교재, 사전, 평가 개발 결과물 공유
 - 외교부 국립외교원, 국방부 국방어학원 등 국가기관 어학과정 운영에 활용·연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피드백을 통해 개선·보완
 - 인터넷 포털 외국어 사전에 특수외국어 학습 자료 무료 제공
 - ※ 인터넷 포털 어학사전 메인페이지에 언어별 배너를 통한 학습자료 제공
- 기관별 특수외국어 관련 프로그램 교류를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국방어학원 언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외국군과 국내 학습자 간 교류(온누리행사, 튜터링 등)를 통한 상호 이해 및 학습 효과 제고
 - 각 기관 교수진 및 연수생, 전공생 등이 함께 하는 주한 대사관 방문의 날 행사, 언어별 교류협력 세미나 등 행사 운영

2-2 국내·외 언어 교류협력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 특수외국어 전문인재 중심의 학술 교류·협력 확대

- 대학 - 정부 - 대사관 등이 참여하는 '국제 특수외국어 정기 포럼'을 연 1회 이상 개최하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인적 교류 확대
- 특수외국어 학계와 전문기관들이 참여하는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한 국내·외 교류 활성화 지원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The Korean Association of Critical Foreign Language Education)
- 국내·외 특수외국어 기관 및 연구자의 교류협력을 위한 학술단체

□ 국가 간 교류·협력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연계 강화

- 신남방·신북방 국가 학생 초청 연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생(GKS: Global Korea Scholarship) 동문 초청 연수와 연계한 언어 교류 활성화
- 세계언어교육박람회(ACTFL*: American Council on Teaching of Foreign Languages 주관) 등 국제 행사 참여를 통한 네트워크 확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전 세계 언어 교육과 평가를 제공하는 전문기관

2-3 특수외국어 학습·연구 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특수외국어교육 종합포털 기능 개선

- 기 구축한 특수외국어교육 종합포털*의 현황 분석 및 기능 개선
*(포털 주소) <http://cfl.niied.go.kr>, 연간 약 5,000여명 방문
- 연구·개발·성과 확산을 위한 플랫폼으로 개편하여 교수·학습 자료 공유, 프로그램 제공, 채용 정보, 관련 링크 등 접근성 확대

□ 특수외국어 강좌 운영, 자료 공유 등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 특수외국어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 수강 신청·관리와 강의 평가를 통한 환류 등 학습 지원체계 구축
※ 언어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특수외국어 배워보기' 실시간 화상 수업을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에서 일반인(대학생, 직장인 등)까지 확대

- ◆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고도화**와 **효율적인 성과 관리**로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3-1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및 평가 고도화

□ 언어별 표준교육과정에 대한 현장 타당성·적합성 제고

- 1차 사업 연구·개발 성과* 및 현안 분석을 통한 개선 과제 도출
 - 유럽언어공통기준에 따라 개발한 교육과정, 교재, 평가문항을 현장에 적용하고, 이에 대한 분석 및 개선 연구, 활용, 환류 등을 순차적으로 수행
 - *15개 언어별 표준교육과정(A1~B2 단계)에 맞는 기본교재 및 평가문항, 사전 개발
- 교육과정 및 평가문항 현장 적합성 검증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 연구·개발 방향을 설정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문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 *교육과정 및 평가 전문가, 특수외국어 전공 교수 등 10여명으로 구성
 - 특수외국어별 교육과정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부분과 언어별 특성과 차이를 반영하는 내용을 구분하여 연구·개발 추진

□ 언어별 어학능력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 체계화

- 특수외국어 사용국이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어학평가를 분석하여 현재 국내 시행중인 4개 언어*외 시험의 국내 시행 추가 확대 추진
- *대학, 주한 문화원 등을 통해 터키어, 베트남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시험 시행(21 기준)
- 전문교육기관이 공동개발하고 시행 중인 ‘특수외국어능력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체계에 맞는 어학능력평가 연구·개선
- *15개 특수외국어를 대상으로 실시('20~), 국비유학생 선발과 특수외국어 전공생 졸업 인증 등에 활용

3-2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통한 사업의 효과성 검증 및 질 제고

- 정부부처, 전문교육기관, 민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특수외국어 사업 추진 및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 사업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를 통한 전문교육기관별 역할 제고
 -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및 연구·개발, 교육활동(교과, 비교과), 진학 지원 등 내실화
 - 타 기관 및 대학과 연계·협력으로 특수외국어교육 진흥 선도
- 사업 추진 일정에 맞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평가 강화
 - 사업과제별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21. 9월~)
 - 추진 시기별 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 및 효과성 검증

□ 「특수외국어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정책연구 및 포럼 등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법령 검토 및 개정 추진

※ [참고] 법령 개정 검토사항

- ‘대국민 서비스’ 측면에 초점을 맞춘 사업 운영방식 변경을 위한 근거 마련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20)
- 5개년 기본계획 등 사업 추진에 맞게 전문교육기관 지정·운영 개선 (정책연구, '20 / 제2차 기본계획 공청회, '21)

V. 향후 일정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 사업별 세부 운영사항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따른 성과지표를 개발하고('21.9월~12월),
- 다양한 협력기관이 폭넓게 참여하여 협업 과제별 실무 협의를 통해 시행계획 수립('22.1월)

□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모니터링 체계 구축

- 기본계획 공고('21.9월) 이후, 사업 추진 현황을 종합포털에 수시 공개
- 사업 참여 기관,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회의, 위원회* 등의 구성·운영으로 체계적인 모니터링 실시
*사업관리위원회(수시), 평가위원회(연 1회 이상), 컨설팅단(연 2회)

□ 협력기관 간 정책 소통 및 국민 참여 확대

- 기본계획 이행상황 및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공개하고, 각계 의견 수렴
- 종합포털을 통해 특수외국어 동향, 학습 및 행사 정보 등 제공(상시)

붙임 1

주요 추진과제 목록

구 분	과 제 명	전담협력 기관	추진 시기
1. 사회적 요구에 따른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1-1 개인 성장단계별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등 온·오프라인 수업 및 언어·문화 체험 	시·도교육청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니어 특수외국어 번역인재 양성 	한국문학번역원 전문교육기관 ¹⁾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학·대학원 강좌 개설 및 학생 교류·연수 	전문교육기관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인 대상 K-MOOC, 원격화상수업,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대학, 지자체 등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휘학습, 필수표현 앱 등 스마트 콘텐츠 개발 	전문교육기관	'22~
1-2 분야별 특화된 특수외국어 전문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문학 콘텐츠 번역인재 양성 	한국문학번역원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한 외국공관 연계 프로그램 	주한 공관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번역플랫폼 기업 공공번역 프로젝트 	관련기업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연계 현지(지역)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KOTRA 등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전문강사 양성 지원 및 인력풀 구축 	전문교육기관	'22~
1-3 특수외국어 전문성을 갖춘 학문후속세대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언어 확대 및 언어별 사업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교육기관 신규 지정 	국립국제교육원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과·대학 연계 전공교육 확대 및 대학원 진학 지원 	전문교육기관	'22~

1)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함

구 분	과 제 명	전담협력 기관	추진 시기
2. 모두를 아우르는 대국민 서비스 확대			
2-1 부처 협업을 통한 특수외국어 교육·번역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통합, 조기적응 특수외국어 번역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연계 특수외국어 통번역서비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양성 지원 • 다문화교육 연계 학습, 상담 등 특수외국어 지원 • 현지 교사와 국내 특수외국어 학습자 간 교류 지원 • 다문화·외국어교육 연계 시·도 맞춤형 프로그램 • 외국인-국내 전공생 간 특수외국어교육 프로그램 교류 • 연구 성과물 공유 및 확산 	법무부 (이민통합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 시·도교육청 국방어학원 외교부(국립외교원), 국방부(국방어학원), 민간기관	'22~ '22~ '23~ '22~ '22~ '22~ '22~
2-2 국제외국어교류 협력유한급별 내역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 특수외국어 정기 포럼 운영 • 특수외국어교육협의회 워크숍 지원 	국립국제교육원 전문교육기관	'22~ '22~
2-3 특수외국어 학습 연구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외국어교육 종합포털 기능 개선 • 특수외국어 학습지원 플랫폼 구축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22~ '23~
3. 교육기반 고도화 및 운영 내실화			
3-1 현장 적용을 통한 교육과정 및 평가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및 평가 고도화 연구개발 • 특수외국어능력평가 개발·시행 	국립국제교육원 전문교육기관	'22~ '22~
3-2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외국어교육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 • 전문교육기관 성과평가 • 법률 및 시행령 개정 	국립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교육부 (국제교육협력담당관)	'22~ '22~ '23~

□ 중점언어 선정 관련

- (정책연구명) 특수외국어교육 진흥계획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20.9월)
- 상위 30위 기준 특수외국어 지역별 분포

지역	해당 언어	개수
중동·아프리카	아랍어, 터키어, 이란어, 스와힐리어, 히브리어, 암하라어, 아제르바이잔어	7 (아제르바이잔어는 터키어와 유사)
유라시아	우즈베크어, 몽골어, 카자흐어, 우크라이나어	4
인도·아세안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힌디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라오스어, 타갈로그어	9 (라오스어는 태국어와 유사)
유럽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헝가리어, 네덜란드어, 스웨덴어, 체코어, 덴마크어, 그리스어	8
중남미	포르투갈어, 브라질어	2 (이들 언어는 사실상 동일)

- (정량분석 기준) ① 발전 잠재력 ② 한국과의 정치·경제 협력가능성 ③ 학문적 수요 ④ 타언어의 대체성

① 발전 잠재력	경제규모(GDP), 인구, 국민소득, 정치적 안정성, 거버넌스, 외국인 투자 규모, 교역 규모
② 한국과의 정치·경제 협력가능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직접투자, 수출입, 교민, 대통령 방문, 고위인사 방문,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중점 ODA 대상국 여부, 공관 및 무역관 소재 여부
③ 학문적 수요	해당언어 관련 국내논문 건수, 해당언어 전공학생 수
④ 타 언어의 대체성	대체 언어가 없는 특수외국어

- (정성분석) 5개 권역별(중동·아프리카, 유라시아, 인도·아세안, 유럽, 중남미) 중요 언어 우선순위

- 공공부문(외교부, 코이카, 국립외교원), 민간부문(코트라, KIEP)

종합분석 결과의 주요 특징

- 베트남어는 아랍어를 제치고 1위를 기록
 - 1차: 아랍어(1위), 베트남어(2위) ⇒ 2차: 베트남어(1위), 아랍어(2위)
 - 산유국으로서 갖는 아랍어의 위상은 저유가 기조, 대체에너지 등장 등으로 과거에 비해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하락
- 신남방 국가의 약진이 두드러짐
 - 신남방 국가의 언어들이 상위권에 다수 포진되었는데, 이는 주로 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데 기인
- 태국어, 크메르어(캄보디아어), 라오스어는 1차에 비해 순위가 크게 상승
 - 1차: 태국어(11위), 크메르어(20위) ⇒ 2차: 태국어(6위), 크메르어(12위)
 - 태국어의 경우 GDP, 1인당 GDP, FDI 등의 상승 폭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정량평가 점수가 상승함. 아울러 한국 인사의 태국방문, 태국 인사의 방한 등 한국과의 협력 부분에서도 점수 상승
 - 크메르어의 경우도 FDI, 교역규모 등의 양호한 경제지표와 캄보디아 인사의 방한, ODA 확대, 한국과의 교역규모, 캄보디아 관련 논문 편수 등 한국과의 협력분야 지표도 증가하여 정량평가 점수 상승
- 타갈로그어(필리핀 인구의 1/4 정도가 사용)의 경우, 정량평가에서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나, 정성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최종 순위가 크게 하락 (필리핀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로, 정성평가에 타갈로그어에 대한 중요성이 낮에 평가됨)
- 1차 평가에서 상위 15개 언어에 포함되었던 폴란드어, 몽골어, 우크라이나어가 2차 평가에서는 15위 밖으로 분포

[참고] 주요 30 개 언어 국내 전공 개설 현황(20년 기준)

구분	제1차 5개년 지원 언어	30위 내 미지원 언어
전공(학과) 개설	베트남어, 아랍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말레이시아어, 태국어, 브라질어, 힌디어, 터키어, 우즈베크어, 미얀마어, 이란어, 폴란드어, 몽골어, 헝가리어, 스와힐리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카자흐어, 우크라이나어, 스웨덴어, 체코어, 덴마크어, 아제르바이잔어, 그리스어
연계 전공	크메르어	라오스어
전공 미개설		히브리어, 타갈로그어, 암하라어

- ◆ '20학년도를 기준으로 특수외국어 학과를 개설운영하는 4년제 대학 수는 변함이 없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대학 입학정원과 대학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임
- ※ 대학입학정원: 1,493명('16)→1,393명('20), 대학원: 14개('16)→10개('20)

- 특수외국어에 해당하는 학과가 개설된 4년제 대학은 8개(35개 언어)이며, 대학원은 10개가 운영되고 있음
- (대학) 한국외대가 27개 학과(입학정원 856명)로 가장 많으며, 부산외대가 9개 학과(입학정원 315명)를 개설·운영 중임
 - 그 외에는 단국대, 청운대, 조선대, 명지대, 서울대, 영산대가 교육 실시

< 국내대학 특수외국어학과(부) 개설 현황 >

- (외국어대) 한국외대(27개 학과·전공*, 856명), 부산외대(9개 학과·전공**, 315명)
 - * 아랍어과, 터키·아제르바이잔어과, 우크라이나어과, 말레이·인도네시아어과, 베트남어과, 중앙아시아학과, 인도어과, 폴란드어과, 체코·슬로바키아어과, 스칸디나비아어과 등
 - ** 아랍어과, 터키·중앙아시아어전공, 태국어, 인도어, 이탈리아어, 포르투갈어 등
- (일반대) 단국대(몽골학과·중동학과·포르투갈·브라질어과, 베트남학과 102명), 청운대(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과 베트남비즈니스, 25명), 조선대(아랍어과, 36명), 명지대(아랍지역학과, 39명), 서울대(아시아언어문명학부 : 3개전공*, 15명), 영산대(글로벌학부 내 한베트남통역, K-비즈니스 전공, 41명)
 - * 동남아시아(마인어, 베트남어, 타이어), 인도(힌디어, 산스크리트어), 서아시아(아랍어, 페르시아어, 터키어 등)

- (대학원) 한국외대에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형태로 13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부산외대에 2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음
 - 그 외에는 8개 대학원에 각 1~2개의 특수외국어 학과가 개설·운영 중임

< 국내대학원 특수외국어학과 개설 현황 >

- (외국어대) 한국외대(13개 학과*), 부산외대(2개 학과**)
 - * 인도-아세안어문번역학과, 동유럽어문학과, 스칸디나비아어문학과, 아프리카어문학과, 고전어문·문화학과, 중동언어·문화학과, 터키·중앙아시아·몽골학과, 포어포문과 등
 - ** 글로벌지역학과, 베트남어교육전공
- (일반대) 경희대(유럽어문학과), 단국대(몽골학과, 유럽어문학과, 중동아프리카학, 이란어문학), 명지대(아랍지역학과), 영남대(유럽지역문화학과), 전북대(스페인·중남미어문학과), 조선대(아시아학과), 청운대(베트남학과), 방통대(아프리카·불어권 언어문화학과)

※ 2020학년도 기준 자료

법령 시행령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16.8월 제정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인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특수외국어를 배우려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특수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수외국어“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말한다.
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특수외국어를 사용하여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3.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추어 해당 언어에 능통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 중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학교를 말한다.
5. “특수외국어 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으로서 학교에서 특수외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국민에게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문성 있는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정부 및 교육 관련 국제기구, 외국의 특수외국어교육·훈련 기관, 국내외 민간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정책방향 및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수외국어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6.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부문의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지원 방안
7.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기초로 특수외국어 교육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 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거나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의 작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교육역량을 갖춘 학교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운영평가에 따라 성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및 지정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교육기관의 업무) ①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2.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양성교육
3.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운영 지원
4. 특수외국어 교원의 연구·개발 지원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②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협력) 전문교육기관은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 특수외국어 관련 교재 개발 등에 관하여 국제기구 및 해외 교육·연구기관 등과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료 제공의 요청)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국회 보고)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수립한 때에,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2년마다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문)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수외국어의 범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란 별표의 언어를 말한다.

제3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기본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3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한 주요 사업
2.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
3.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반영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 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 현황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 기관 현황
3.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연구 현황
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및 통계 작성을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전문교육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갖출 것
2. 특수외국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출 것
3.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수행계획서
2. 특수외국어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 업무수행 경비의 조달계획서
4.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을 지정·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관에 알리고, 교육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경비의 지원)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교류·연수에 필요한 경비
2. 특수외국어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특수외국어 교육용 기자재·장비 구입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경비
4. 해외 외국어 교육·연구 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8조(권한의 위임) 교육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법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평가
3. 법 제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의 지정·평가·재지정 및 취소
4. 법 제11조에 따른 자료 제공의 요청
5. 법 제13조에 따른 청문의 실시